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036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3940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0368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7909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중

변론 종결2024. 3. 21.

판결 선고2024. 4. 18.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2. 선고 2022가단7909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 체결된 증여계약을 61,286,8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1,286,8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 체결된 증여계약을 61,293,93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1,293,9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D은 2020. 12. 19. 원고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21. 5. 12.경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근저당권 말소

한편, C은 2010.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에 대한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017. 6. 1.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49,965,331원이었는데, 피고는 그 무렵 위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은 2017. 8. 28. 말소되었다.」

■ 제1심판결 3쪽 9행의 「갑 1 내지 7호증,」 다음에 「갑 10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10행의 「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78353호)에서 D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은 양도금지채권이므로, D이 원고에게 판결금채권을 양도하는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은 2017. 9. 26.경 '본인은 D에게 2018. 1. 1.부터 매주 월, 화요일 이틀에 걸쳐 10kg 짜리 파지 100개를 납품할 것을 약속합니다(월 400개 이상). 이를 어길 시 민사상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서명하였고, D은 위 각서 하단에 '이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한 사실, ② 원고와 D 사이에서 'D이 재활용 폐지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C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2012. 6. 13. 자로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8. 2. 22. 자 채권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③ 원고는 위 채권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원고가 'D이 C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양수함과 아울러 D과 C 사이에 체결된 납품계약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44,448,02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5418호), ④ 위 사건에서 C은, D이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계약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확인하였으므로 D은 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계약상 지위 인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툼 사실, ⑤ 위 사건에서 '납품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납품계약과 분리하여 선급금채권만을 별도로 양도양수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D은 납품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정하였고, C은 납품계약의 인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다투고 있는 점, 납품계약이 해지·해제됨으로써 선급금채권이 정산되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8. 11. 16.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5418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기는 하나, 이는 D과 C 사이의 납품계약이 해제·해지 등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서의 취지에 반하여 C의 동의 없이 D이 원고에게 선급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78353호로 39,669,985원의 선급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이로써 D과 C 사이의 납품계약은 해지 등을 이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D과 C 사이의 법률관계는 C이 D에게 39,669,985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서는 D과 제3자 사이의 납품계약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납품계약이 종료된 이후 D이 지급받아야 할 판결금채권을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특약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D은 원고에게 C의 동의가 없더라도 판결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4쪽 3~4행의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채무자 C의 자녀로서 C와 가족관계에 있어 누구보다 C의 자력 등을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6쪽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검토

피고가 2017. 6. 9.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변제를 이유로 2017. 8. 28.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사해행위 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 가액을 한도로 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의 가액은 458,888,520원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49,965,331원, C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2억 1,000만 원(= 총 반환채무 4억 2,000만 원 × C의 1/2 지분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책임재산)은 98,923,189원(= 458,888,520원 - 149,965,331원 - 2억 1,000만 원)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가액반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11.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가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보전채권(판결금채권) 원리금은 61,286,874원¹⁾ 이 되고, 이는 공동담보가액 98,923,189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와 C 사이에서 2017. 6. 1. 체결된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인 61,286,8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위 61,286,8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박재형

판사정옥도

판사정우석

별지

1) 원금 39,669,985원 × [28/366(= 2019.05.04.부터 2019.05.31.까지)] × 15% = 455,229원

원금 39,669,985원 $\times$ $[4 + 163/366 (= 2019.06.01.부터 2023.11.10.까지)] \times 12\% =$
21,161,660원

이자 합계 21,616,889원 (= 455,229원 + 21,161,660원), 원리금 합계 61,286,874원 (= 원금
39,669,985원 + 이자 21,616,889원)